로마법이 착취자국가의 법에 미친 영향

현 웅 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의 법규범과 규정들은 다 근로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착취계급의 리익과 착취제도를 옹호하기 위한것입니다.》(《김일성전집》제51권 288폐지)

자본주의법의 반동성을 옳게 파악하는데서 로마법이 착취자국가들의 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것을 명확히 해명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노예소유자국가의 법이였던 로마법은 착취계급의 정치경제적지배실현에 유리하게 규제된것으로 하여 이후의 착취자국가들의 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 대륙법계를 이루고있는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일찌기 로마법에서 규제하였던 법술어와 개념, 법원칙과 제도들에 기초하여 부르죠아지들의 사적소유를 보호하기위한 법들을 제정하고 유지하여오고있다. 이로부터 로마법은 적지 않은 자본주의나라들의법의 중요한 력사적원천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오늘 부르죠아지들은 로마법이 세계의 법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떠벌이고있다.

세계의 법발전에 미친 로마법의 영향이란 본질에 있어서 로마법이 착취계급국가의 법인 봉건법과 자본주의법에 미친 반동적영향을 말한다.

로마법은 무엇보다먼저 유럽의 봉건국가들의 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

로마국가의 쇠퇴와 함께 일단 자취를 감추었던 로마법은 유럽의 봉건사회발전과정에 조성된 일정한 정치경제적환경에 의하여 12세기초부터 유럽의 봉건국가들의 법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당시 유럽의 봉건국가들에서는 로마법을 받아들일수 있는 정치경제적조건이 마련되게 되였다.

우선 유럽봉건통치배들이 로마법을 리용할수 있는 정치적환경이 조성되였다.

12세기부터 일련의 유럽의 봉건국가들에서는 오랜 기간 존속되여온 봉건적할거세력들에 의한 정치적분렬상태를 끝장내고 중앙집권화된 통일적인 국가를 세울데 대한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서유럽의 여러 봉건국가들에서 국왕과 도시민상층은 자기들의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중앙집권화된 왕권실현을 희망하였다. 대봉건세력들에 의하여 왕권이 제한을 받고있는데 불만을 품고있던 국왕세력은 중앙집권화된 왕권을 통하여 저들의 리익을 실현하여줄것을 요구하는 도시민들의 지지밑에 점차 왕권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왕권강화를 지지하는 세력은 로마법을 봉건할거세력을 반대하는 리론적근거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것은 로마법의 공법에서 군주의 절대적권력을 리론적으로나 법적으로 옹호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유스티니아누스학설집》 1권에서는 《군주가 결정한 일은 법적효력을 가진다.》라고 지적되여있었다. 봉건왕권을 강화할것을 요구하는 각 봉건국가들의 군주들은 로마법의 이 원칙을 리용하여 군주의 절대적권위를 론증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로마법을 리용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고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시민계층은 중앙집권화를 통하여 상품류통을 가로막던 각종 봉건적장벽을 없애 버리고 상업과 수공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려는 목적밑에 로마법을 받아들일것을 원하였다.

또한 유럽의 봉건국가들에서는 로마법을 리용하려는 사회경제적환경이 조성되였다.

중세 중엽과 말기에 서유럽에서 도시국가들이 번성하고 상품경제가 발전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봉건사회의 태내에서는 새로운 착취관계인 자본주의적착취관계와 부르죠아계급 이 자라나고있었다.

주로 수공업과 상업을 통하여 치부한 부르죠아지들은 저들의 리해관계를 실현시켜줄수 있는 새로운 법의 출현을 요구하였으며 그것으로 점차 확대되고있던 자본주의적착취관계와 상품무역관계를 규정할것을 요구하였다. 새롭게 형성되여 파급되여가던 자본주의적착취관계와 새로 자라난 부르죠아계급의 이러한 요구를 실현해줄수 있는 법은 당시로서는 로마법밖에 없었다.

로마법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제도를 적극 옹호하였으며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상품생산을 둘러싼 사람들사이의 각종 관계를 구체적이면서도 전면적으로 규정한 법이였 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봉건국가들의 봉건법과 유럽사회를 휩쓸던 교회의 법, 게르만법 은 로마법에 대비도 되지 않았다.

로마법에 대한 연구를 제일먼저 진행한 나라는 이딸리아였다. 12세기부터 이딸리아의 대학들에서 로마법에 대한 열기띤 연구가 진행된 결과 《주석법학파》가 출현하여 착취계급국가의 법발전에 필요한 로마법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딸리아의 뒤를 이어 프랑스와 도이췰란드, 에스빠냐를 비롯한 여러 유럽의 봉건국 가들에서도 로마법연구가 진행되였으며 로마법연구를 둘러싼 많은 학파들이 출현하였다.

대륙의 봉건국가들의 법의 영향을 배제하고 판례법을 위주로 하여 저들의 독특한 법률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고있던 영국봉건국가에서도 부르죠아세력이 점차 형성강화됨에 따라 그들의 리익을 어느 정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판례법을 만들어내였다. 그것이바로 오늘 영국자본주의법체계의 하나에 속하는 《형평법》이였다.

로마법은 봉건지배계급의 리익의 대변자, 옹호자인 왕권을 강화하고 봉건적착취계급의 경제적리익을 옹호하며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를 보다 강화하는 측면에서 봉건법에 영향을 주었던것이다.

로마법은 다음으로 부르죠아국가들의 법형성과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였다.

봉건사회말기에 와서 더욱 번창하던 로마법연구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도는 봉 건제도가 전복되고 부르죠아지들이 정권을 장악한 후부터 보다 더 강해지기 시작하였다.

자본주의법은 정권을 장악한 부르죠아지들이 근로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자본가 계급의 리익과 자본주의제도를 옹호하기 위한 정치적지배의 수단이다.

부르죠아계급은 노예소유자법인 로마법이 자본주의법과 그 류형에 있어서 구별되지 만 다같이 근로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 착취계급국가의 법인것으로 하여 저들의 지배실 현에 유리한 로마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상품경 제관계를 자세히 규제한 로마법은 정권을 장악한 부르죠아지들의 사적소유를 보호하고 자본주의적착취관계를 수립하는데 대단히 적합한 법으로서 부르죠아지들의 재산상의 리 익을 보호하는데서 거의 《수정이 필요없는 법》으로서의 가치를 가졌다. 그리하여 로마법 은 현재까지도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의 법리론과 법제정에 큰 영향을 주고있다.

로마법을 제일먼저 받아들인 자본주의국가는 프랑스였다.

프랑스통치계급은 정권을 장악한 후 부르죠아계급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로마법의 기초우에서 새로운 법제정사업에 착수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것은 나뽈레옹이였다.

나뽈레옹은 1799년에 정권을 장악한 후 4명의 법학자들로 법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법전들을 작성할데 대한 임무를 주었다. 나뽈레옹의 적극적인 참가와 후원밑에 프랑스에서는 1804년에 《민법전》, 1806년에 《민사소송법전》, 1807년에 《상법전》, 1808년에 《형사소송법전》, 1810년에는 《형법전》이 제정되게 되였다. 이 5대법전들은 주로 로마법의 기본알맹이들을 흡수한것과 함께 부르죠아혁명전에 공포된 자본주의발전에 유리하였던 일련의 법들과 부르죠아혁명시기에 나온 개별적인 법들을 참작한것이였다.

로마법은 프랑스외에도 서유럽자본주의나라들의 법제정에도 영향을 주었다.

서유럽자본주의나라들은 각이한 정도에서 로마법을 모방하거나 참작하였으며 그 나라들의 식민지로 되였던 나라와 지역들에서도 구식민주의적통치방법인 총독정치의 결과 거의나 종주국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었다.

총독정치에서 총독은 식민지에서 제정된 법이나 행정기관들의 결정, 지시들이 종주국의 법에 어긋날 때에는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식민지의 법을 종주국의 법과일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식민지의 법은 종주국의 법과 류사한 점이 많았다. 식민지들은 종주국의 법을 통하여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

로마법이 부르죠아국가의 법에 영향을 주게 된 원인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원인은 우선 로마법이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한 사회에서 착취계급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법규범들을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였기때문이다.

로마법이나 자본주의법은 그 계급적성격에서 구별될뿐 본질에 있어서 다같이 착취사회의 법이다. 착취사회의 법은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본성으로 하는 착취계급의 정치경제적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로마법중에서 사법에 해당한 부분은 부르죠아지들이 자본주의법률제도를 수립하는데 서 로마법을 적극 리용할수 있도록 자극하였다.

기본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사적소유자들의 재산소유관계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규정한 로마의 사법은 정권을 장악한 후 자본주의적사적소유를 보호 할데 대한 부르죠아지들의 요구실현에 완전히 부합되는 법이였다.

그 원인은 또한 로마국가가 주변나라와 지역들에 대한 침략정책과 식민지정책을 발 광적으로 추진하면서 저들의 법을 강제적으로 내려먹였기때문이다.

로마의 력사지리적환경은 세계의 많은 지역과 나라에 로마법의 전파를 촉진시킨 외 부적원인의 하나로 볼수 있다.

로마통치배들은 피정복지역들에 로마의 법을 강요하면서 로마법을 전파시켰다.

로마국가는 공화제시기부터 끊임없는 침략전쟁과 령토팽창정책을 추진시켜 령토를 대폭 확장하였다. 강점된 로마의 식민지들에는 많은 로마시민들이 흘러들어가 주인행세를 하였으며 그들은 식민지주민들과 여러가지 생산 및 상업거래를 진행하였다. 로마통치배들 은 로마인들의 리익을 위하여 식민지의 법이 아니라 로마법을 강제로 실시하였다.

로마의 경제가 일정하게 발전하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교통과 무역활동이 폭넓게 진행된것은 로마법의 발전과 전파를 촉진시켰다.

주변나라와 지역들과의 경제교류와 사상문화의 교류에 의하여 로마의 지배계급에게 유리한 법률사상과 법원칙, 법들이 흘러들어옴으로써 로마의 법사상과 법제정, 법률제도 는 그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였다. 로마법의 자연법사상과 저당제도는 그리스에 서 넘어왔고 소비대차제도는 씨칠리아에서 넘어왔으며 일련의 계약제도는 에짚트에서 넘 어왔다.

특히 로마의 시민법은 로마의 고유한 법이지만 만민법은 로마인들이 외국인들과의 상업거래과정에 발생한 관습들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법이였다. 그리하여 만민법의 적지 않은 법규범들은 이미 유럽의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 《낯설은것》이 아닌것으로 되였다. 이 것은 로마법의 전파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수 있게 하였다.

그 원인은 또한 로마통치배들이 저들의 반동적인 정책을 비호하기 위한 사상리론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학연구를 중시하였기때문이다.

로마에서는 공화제시기부터 통치배들이 법학을 중시하고 법학자들을 국가관리로 등 용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 로마에서는 법률학교들을 내오고 법에 대하여 교육하고있었다. 이 학교들에는 착취계급출신의 자녀들만이 들어가 공부할수 있었다.

로마에서는 누구든지 고위관리로 등용되자면 반드시 법에 대하여 배우고 일정한 기간 재판관으로 사업하여야 하였으며 퇴직한 대법관은 대다수가 원로원에 들어가거나 혹은 피정복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였다. 그리하여 착취계급출신들은 앞을 다투어 법학교에들어가 법학을 배웠는데 이것을 큰 자랑거리로 여겼다.

로마통치배들은 법학교육을 중시하여 지배계급의 정치적지배의 주요한 실현수단인 법을 더욱 강화하고 착취계급의 재산상리익을 더욱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주려고 하였다.

로마통치배들은 저들의 이러한 정치적의도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일련의 법학자들에 게 립법권을 비롯한 특권을 부여하여 로마법을 발전시키는것을 장려하였다.

아우구스투스(B.C.63년-A.D.14년)는 일련의 법학자들에게 《공개해답권》을 주어 그들의 해답이 매개의 구체적인 사건들에서 구속력을 가지게 하였다. 따라서 《공개해답권》을 가진 법학자들은 착취계급속에서 높은 《권위》를 가지고있었으며 그들로부터 숭배되였다.

세계법력사상 처음으로 사적소유관계와 상품생산관계를 자세하고도 전면적으로 규정한 로마법은 일련의 봉건국가들의 법과 자본주의나라들의 법에 큰 영향을 줌으로써 해당국가의 착취계급이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더 잘 실현할수 있게 하였다.

이상과 같이 로마법이 세계의 법발전에 준 《영향》과 《공헌》이란 봉건통치배들과 부르죠아지들이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마음대로 억압하고 착취할수 있게 하는데 기여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영향》과 《공헌》이였다.

우리는 착취사회의 국가와 법의 반동성을 똑바로 알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 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해주는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 의제도를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